

■ 일반공급 신청자격

구분	내용
일반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본 잔여세대모집은 『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』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차인 자격 조건 완화 만 19세 이상이며,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. - 잔여세대 신청은 청약통장 가입여부, 자산보유액,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 ·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·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신청은 가능하나,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접수 시 접수 건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·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.

■ 특별공급 신청자격

모집 분야	자격 요건
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차인 모집공고일[2024.03.20(수요일)] 기준 만 19세(2005.03.20출생)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. 연령 : 만 19세(2005.03.20.출생)이상이면서 만 39세(1984.03.21.출생) 이하일 것(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) 나. 혼인 : 혼인 중이 아닐 것 다. 소득 :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(1)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를 포함한다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(이하 "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"이라 한다)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(2)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: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라. 자산 :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
신혼부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차인 모집공고일[2024.03.20(수요일)]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(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, 무주택세대구성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)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(국내거소 외국인, 법인 청약신청 불가) 가. 혼인 :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. 소득 : 해당 세대(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)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다. 자산 :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
고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차인 모집공고일[2024.03.20(수요일)]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,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(국내거소 외국인, 법인 청약신청 불가) 가. 연령 : 만 65세(1959.03.20.출생) 이상일 것(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) 나. 소득 :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다. 자산 :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

·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접수 시 접수 건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.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· 『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 ②』에 따라 특별공급 조건은 최초 모집공고와 변동 없음.

■ 특별공급 소득 기준 산정

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기준	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							
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100% 이하	3,482,964	5,415,712	7,198,649	8,248,467	8,775,071	9,563,282	10,351,493	11,139,704
110% 이하	3,831,260	5,957,283	7,918,514	9,073,314	9,652,578	10,519,610	11,386,642	12,253,674
120% 이하	4,179,557	6,498,854	8,638,379	9,898,160	10,530,085	11,475,938	12,421,792	13,367,645

■ 신청방법

·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5서식], 관계서류 홈페이지게시
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, 유승테라플러스 7층 (방문접수/ 우편접수/ 팩스접수(032-556-8634))

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

※어두운 난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전화번호 (유선) (휴대전화)	
		전자우편	
공급유형	일반공급 신청자 []	특별공급 신청자	
		청년 []	신혼부부 []
신청내역	주택위치	전용면적(m ²)	
	주택유형	단독주택 [], 다가구주택 [], 아파트 [], 연립주택 [], 다세대주택 [], 오피스텔 []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.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.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4.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(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) 5. 혼인관계증명서(별표 1 제1호나목2)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) 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.
2.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, 이 신청서에 적은 사항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,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